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김 원 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44 발의년월일 : 2019. 2.28.

발의의원: 김원규 의원

김대현 의원

김동식 의원

김병태 의원이진런 의원

장상수 의원

하병문 의원

홍인표 의원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안 제3조)
- 나. 스마트농업육성사업 지원 (안 제4조)
- 다.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 구광역시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 하고, 육성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 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6.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